

한의예·학과 한의학교육 자체평가위원회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정관」에 따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한의학과와 한의학교육의 자체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의학교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한의학교육 평가 업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한의과대학장 소속하여 한의학교육 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한의학교육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소위원회 내에 당연직과 학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연구부학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학교육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와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평가영역별로 팀을 구성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행정지원팀

② 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위원 과반수 이상 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인증 대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업무 수행
3. 중간 및 최종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4. 평가인증 관련 항목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개선
5. 그 밖에 한의학교육 인증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타)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